



축산법시행령 일부개정안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0-333호

「축산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축산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악성 가축전염병 질병으로부터 우리축산업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축산업 등록대상을 기존 4개 축종(소, 돼지, 닭, 오리)에서 기타가축 8개 축종(산양, 면양, 사슴,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타조) 사육농가까지 확대하고, 부화업·종축업의 축산업 등록 시 갖춰야 할 시설·장비 기준을 강화하여 전염성 가축질병 발생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축산업의 등록대상 면적 강화 및 등록대상 확대하여 악성 가축전염병 질병으로부터 우리축산업을 보호·관리 (안 제13조)
 - 현재 소사육 농가의 등록대상 면적을 현행 300㎡초과에서 50m²초과로 강화(제13조 1호)
 - 축산업 등록대상을 4개 축종(소, 돼지, 닭, 오리)에서

기타가축(산양, 면양, 사슴,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타조) 사육농가까지 확대(제13조 5호 신설)

나. 부화업·종축업의 축산업 등록 시 갖춰야 할 시설·장비 기준을 강화하여 가축전염성질병 차단(안 제14조 제2항 별표1)

• 부화업은 종란 훈증소독 시설, 종돈업은 담장설치, 농장밖 상하차대 설치, 후보돈 격리사 별도 설치, 종계업·종오리업은 출입구에 소독시설 설치, 종란보관실 설치 등

다. “가축사육면적당 적정사육두수”를 준수하지 않고 밀집사육 할 경우 과태료 처분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축산업 등록의 실효성 확보(안 제14조 제2항 별표3)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축산정책과, 전화 02-500-2047, 모사전

송 02-507-3966, E-mail: kwonws9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축산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축산업의 등록 대상) 제1호 중 “300제곱미터”를 “50제곱미터”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가축사육시설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기타 가축(산양, 면양, 사슴,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타조) 사육업

[별표1] “축산업의 등록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축산업의 종류의 부화업의 시설·장비 등 중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종란 훈증소독시설을 설치할 것

종축업 중 종돈업의 시설·장비 등 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종돈사육시설은 견고한 내구성 재료를 사용하고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종돈업의 시설·장비 등 중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담장을 설치할 것

6. 상하차대를 농장밖에 설치할 것

7. 후보돈 격리사를 별도 설치할 것

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을 갖출 것

종축업 중 종계업의 시설·장비 등 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종계사육시설은 견고한 내구성 재료를 사용하고 단열 및 환기시설을 할 것

종축업 중 종계업과 종오리업의 시설·장비 등 중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출입구에 소독시설을 설치할 것

5. 종란보관실을 별도로 설치할 것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을 갖출 것

가축사육업의 시설·장비 등 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을 갖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2항 [별표1] 중 신설 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실시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축산업의 등록기준(제14조제2항 관련)

축산업의 종류	시설 · 장비 등
부화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화장을 갖출 것 2. 부화장에는 부화실과 병아리방을 설치할 것 3. 부화실과 병아리방은 건고한 내구성 재료를 사용할 것 4. 부화실과 병아리방에는 배수시설 및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5. 부화업을 영위하는 자가 양계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화장을 계사(鷄舍)와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할 것 6. 종란 훈증소독시설을 설치할 것 <신설>
계란집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란집하장을 갖출 것 2. 계란집하장은 건고한 내구성 재료를 사용할 것 3. 계란집하장에는 다음 각 목의 장비를 설치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환기시설 나. 계란을 포장할 수 있는 장비 다. 계란의 무게를 자동으로 구분할 수 있는 선별기 라. 집하된 계란을 운반할 수 있는 장비(예: 지게차 · 컨베이어시스템 등)
종돈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돈사육시설을 갖출 것 2. 종돈사육시설은 건고한 내구성 재료를 사용하고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3. 종돈사육시설에는 종돈분만시설 · 종돈포유시설 및 종돈육성시설을 벽 ·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 4. 종돈업을 영위하는 자가 양돈업 또는 정액등처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종돈 및 번식용 씨돼지의 사육시설을 양돈업 또는 정액등처리업에 사용되는 시설과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할 것 5. 담장을 설치할 것 <신설> 6. 농장 외부에 상하수가 가능한 시설을 설치할 것 <신설> 7. 후보돈 격리시설을 별도 설치할 것 <신설> 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을 갖출 것 <신설>
종계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계사육시설을 갖출 것 2. 종계사육시설은 건고한 내구성 재료를 사용하고 단열 및 환기시설을 할 것 3. 종계사육시설에는 종계의 품종별, 세대별 및 사육단계별로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을 벽 ·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 4. 출입구에 소독시설을 설치할 것 <신설> 5. 종란보관실을 별도로 설치할 것 <신설>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을 갖출 것 <신설>
종오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오리 사육시설을 갖출 것 2. 종오리 사육시설은 건고한 내구성 재료를 사용할 것. 다만, 종오리 사육시설의 바닥은 흙으로 할 수 있다. 3. 종오리 사육시설에는 종오리의 품종별, 세대별 및 사육단계별로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을 벽 ·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 4. 출입구에 소독시설을 설치할 것 <신설> 5. 종란보관실을 별도로 설치할 것 <신설>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을 갖출 것 <신설>
가축사육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축사육시설은 통풍이 잘 이루어지는 구조이거나 당해 가축사육시설에 환기시설을 갖출 것 2. 양계업 중 육용 씨수탉과 산란용 암탉간의 교배에 의하여 부화용 알을 생산하는 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육용 씨수탉 및 산란용 암탉 사육시설은 건고한 내구성 재료를 사용할 것. 다만, 당해 사육시설의 바닥은 흙으로 할 수 있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을 갖출 것 <신설>

별표 2

과태료부과기준(제27조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		
		1회	2회	3회 이상
1.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1호	20	100	200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2호	50	200	300
3.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2호	10	50	200
4. 법 제20조제1항 및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3호	100	200	300
5. 법 제22조제4항 및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4호	10	100	200
6.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5호	100	200	300
7. 법 제2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6호	10	50	200
8.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7호	10	50	200

〈비고〉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을 적발한 날로 한다.
-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